

---

# **안전망 대출 관련 Q&A**

---

**2018. 2.**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순서

## < 안전망 대출 공급 관련 >

1. 안전망 대출 공급 규모(1조원)가 부족한 것 아닌지?..... 1
2. 향후 3년간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기로 한 이유는?..... 2
3. 안전망 대출을 통해 기존자금의 연장을 지원하더라도 향후 신규자금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한데?..... 2
4. '18.2.8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의 금리가 최대 24%까지인데 금리가 높은 수준 아닌지?..... 3

## < 안전망 대출 신청 안내 관련 >

1. 안전망 대출 신청 대상은?..... 4
2. 안전망 대출의 금리와 한도는?..... 4
3. 신청방법은?..... 5
4. 사전 신청만 하면 반드시 안전망 대출이 되는지?..... 6
5. 안전망 대출도 거절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6
6. 대출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7
  - 6-1. 소득 증빙이 가능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8
  - 6-2. 통상의 소득증빙서류로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직군을 위해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9
  - 6-3 채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목록은?..... 10

## < 안전망 대출 공급 관련 >

### 1. 안전망 대출 공급 규모(1조원)가 부족한 것 아닌지?

- 공급 규모인 1조원은 출시 시점의 '공급목표'로, 향후 상품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
  -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일부는 안전망 대출이 아닌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지원 가능 전망\*
  -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조원) : ('14) 4.4 → ('15) 4.7 → ('16) 5.0 → ('17) 6.7
- 다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전부\*에 대해 대출을 제공해 잠재적 연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 채무조정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
- 이에 따라, 금번 상품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실제 수요에 따라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임
  - 그동안 진흥원에 축적된 고금리 대출자의 특성 정보를 반영하여 저신용 차주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흡수\*해 나가되,
    - \* 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대비 완화된 심사 적용
    - ② 기존 정책상품 대비 장기분할상환 허용을 통한 상환부담액 경감 등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및 복지 지원을 적극 연계하여 자활과 재기를 지원

## 2. 향후 3년간 안전망 대출을 한시 공급하기로 한 이유는?

- 대출갱신 등 기존 계약 만기도래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였음
    - 직전 최고금리 인하(→27.9%)시에도 시장 영향이 일시에 나타나지 않고 2~3년간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 \* 27.9% 이하 대부업 차주 비중 : ('16.3) 9.9% → ('16.12) 52.7% → ('17.6) 69.1%

## 3. 안전망 대출을 통해 기존자금의 연장을 지원하더라도 향후 신규자금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한데?

- 최고금리 인하는 무분별한 대출 관행에 따른 연체자 양산 등을 방지하려는 '대출 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
    - “일단 대출 후 추심”하는 고금리 대출 시장이 “상환능력에 따라 빌려주고 상환받는” 시장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 기대
- ⇒ 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신규대출의 일부 감소는 불가피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
- \*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진 저신용자는 채무조정 및 복지 지원을 통해 재기와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
- 다만,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 취약계층은 안전망 대출과 별도로 햇살론 등 기존 4대 정책상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임
- \* 4대 정책상품 공급 추이(조원) : ('14) 4.4 → ('15) 4.7 → ('16) 5.0 → ('17) 6.7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약 금융이용자에 대한 복지지원 연계를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대출 수요를 보완

#### 4. '18.2.8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의 금리가 최대 24%까지 인데 금리가 높은 수준 아닌지?

- 한정된 재원 하에서 대부업 대출도 거절되는 高위험 차주 지원을 위해 현행 금리대(12~24%)의 상품 운용이 불가피
  - 다만, 상품 운영 과정에서 실제 부실률 추이 등을 보아가며 금리 인하여력이 있는지 최대한 살펴나갈 계획
- 한편, 24%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적용받는 가장 높은 금리로, 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10%대 중금리로도 지원될 것임
  - 또한, 24%로 지원받더라도 성실상환시 매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해 원활한 재기를 지원
- ※ 24%로 대출받는 차주도 2년 이상 성실상환시 20% 이하 중금리대 대출로 진입하고, 최대 12%까지 인하

## < 안전망 대출 신청 안내 관련 >

### 1. 안전망 대출 신청 대상은?

□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① 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

②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어도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중으로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도 대상

\* 원금상환부담이 만기에 일시 도래하므로 목돈이 없는 한 대출 청산이 어려움

□ 구체적으로, '18.2.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가 신청 가능

① 저소득자 : 소득 3,500만원 이하자

② 저신용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 2. 안전망 대출의 금리와 대출 한도는?

□ 차주가 보유한 24% 초과 고금리 채무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12~24%\*로 대출이 가능함

\* 단, 성실상환자는 6개월마다 최대 1%p씩, 이용기간 중 최대 12%p 금리인하

○ 다만,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최대 한도와 금리대는 차주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3. 신청 방법은 ?

□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

\* 안전망 대출 취급 15개 은행 지점별 창구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단,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국민, 신한, 우리, 기업, KEB하나, SC, 씨티,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전에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에 지원요건, 구비 서류 등을 우선 문의한 후 진행을 권장

□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차주별 상황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도 종합 제공하므로,

\* 안전망 대출뿐 아니라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 대출 지원 여부 판단

○ 가급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권장

---

#### ※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자 연계 지원 체계

① 상대적으로 상환능력 양호 → 안전망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연계

\* 금융사(저축은행, 여전사 등) 대출상품의 대출 가능여부, 대출 가능시 예상 한도 및 금리 등을 병행 안내

② 기존 상품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안전망 대출 지원 연계

③ 대출 연체, 채무 과다 등 대출 곤란 → 채무조정 연계

---

#### 4. 신청만 하면 반드시 안전망 대출이 지원되는지?

-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 특히, 대출 연체 차주, 채무불이행 차주, 회생·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복위·한국자산관리 공사·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가능) 등

- 다만,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정책금융 상품보다 완화된 상환능력 평가 체계가 적용

#### 5. 안전망 대출도 거절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 안전망 대출 지원이 어려운 사전신청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금애로를 최대한 경감할 계획

- ①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안내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 ① 연체 90일 미만 단기연체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② 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②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적극 연계

- 상기 지원은 대면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 가능하므로 안전망 대출 신청시 가급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권장

## 6. 대출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 사전신청시에는 ①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대환 대상 채무\*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

\* 대환이 필요한 금리 24% 초과 채무의 잔액과 금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 대출신청자의 소득 증빙시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하여 모두 인정

- 특히, 한계차주는 고용상태\*에 따라 통상의 소득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권 대비 대체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

\*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등

### < 소득 인정 기준 >

- ◎ 과세 전 기준으로 연소득 산정
- ◎ 소득발생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소득을 연환산하여 인정
- ◎ 동일인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합산
- ◎ 사업소득은 업종이 변경된 경우 현재 업종 소득만 인정

- (채무 증빙) 안전망 대출이 대환하는 대상 채무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확인서 등 채무 증빙 서류\*

\* 채권자(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가 발행하고 금리, 만기일, 상환방법 등이 표시된 채무 증명서류

## 6-1. 소득 증빙이 가능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 ① (급여소득자) 재직 증명 서류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 재직증명 : ① 4대보험 가입 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중에서 택1
- 소득증빙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연봉계약서 중에서 택1

### ②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서류 종류에 따라 증빙 전액을 인정하거나 환산 소득금액을 적용)

- 사업소득증명원 : 기재액 전액 인정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환산소득금액 적용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환산 후 최대 4,500만원 인정
-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 최대 2,000만원 인정

### ③ (연금소득자)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중에서 택1

**6-2. 통상의 소득증빙서류로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직군을 위해 추가로 인정되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일용근로자 등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함

< 추가 소득증빙 가능 서류 목록 >

구 분	증빙 가능 서류 종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신고자)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2) 최근 3개월간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근로소득미신고자	(1) 근로(고용)확인서[별도 서식] (2)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3) 최근 3개월간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1) 사업소득확인서[별도 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확인)
영세자영업자	(1) 사업소득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 증명원(국세청 발급)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확인)

다만, 상기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를 소액으로 운영

< 소득 증빙 방법별 한도 >

구 분	대체증빙 연소득 인정 한도	대출 한도
일용근로자	대체 증빙서류로 확인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미신고자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1,200만원 한도로 인정	1,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1,500만원 한도로 인정	

### 6-3. 채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목록은?

- 채권자가 발급한 금리, 만기일, 연체 여부, 상환방법 등이 표시된 채무증빙 서류가 필요
    -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이 발급한 ① 금융거래확인서, ② 계좌조회표\* 등
- \* 대부업자의 경우 대출계좌조회표, 금융거래조회표 등 명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 상품의 특성상 채무증빙 서류를 통해 차주가 보유한 채무의 만기, 금리 등을 확인할 필요